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7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성원·고동진·김선교

이종배 · 송석준 · 구자근

박충권 · 김용태 · 임이자

박성훈 · 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 너지원과 달리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 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 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 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 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가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4(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4 가스위원회

- 제10조의16(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 ② 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③ 가스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제10조의17(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이나 전기공학, 이와 유사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가스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가스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가스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어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⑤ 임기가 끝난 가스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⑥ 가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의18(가스위원회의 기능 및 재정) ① 가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사항
 - 2. 제10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의9에 따른 대상물량 제한 및 조정, 수입 제한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6.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 7. 제18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8.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9. 제24조에 따른 가스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0. 제39조의2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심의 및 승 인에 관한 사항
 - 1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사항
 - 13. 도시가스사업법 등 천연가스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14. 가스도매요금 총괄원가의 산정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5. 다른 법령에서 가스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10조의19(의결정족수) 가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20(운영 및 처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가스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위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장의4 가스위원회
<u><신 설></u>	제10조의16(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
	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u>둔다.</u>
	② 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상임
	<u>으로 한다.</u>
	③ 가스위원회의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u>또는 위촉한다.</u>
	④ 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가스위원회에 사
	무기구를 둔다.
<u> <신 설></u>	제10조의17(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으로 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경영학·가스공학이나 전기공 학, 이와 유사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 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가스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
 거나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 직기간은 합산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스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가스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⑤ 임기가 끝난 가스위원회 위 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⑥ 가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 니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의18(가스위원회의 기능 및 재정) ① 가스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신 설>

- 2. 제10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의9에 따른 대상물량제한 및 조정, 수입 제한에관한 사항
- 4. 제10조의15에 따른 등록의취소나 사업의 정지에 관한사항
- 5.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6.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

 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 7. 제18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8.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9. 제24조에 따른 가스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0. 제39조의2에 따른 시설공사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심의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13. 도시가스사업법 등 천연가

 스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심의

 에 관한 사항
- 14. 가스도매요금 총괄원가의산정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5. 다른 법령에서 가스위원회의 시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위원회의 재정사 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9(의결정족수) 가스위원 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의20(운영 및 처우) 이 법
에 규정된 것 외에 가스위원회의 의 조직·운영과 위원의 처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